

국회에서 의결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노무현 인

2007년 1월 3일

국무총리 한명숙

국무위원
산업자원부 장관 정세균

●법률 제8197호

특허법 일부개정법률

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특허청장·특허심판원장·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때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특허청장 등은 해당 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단축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 본문·단서의 규정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.

제4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各號”를 “各 호”로 하며,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.

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.

제42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, 동조에 제5항 내지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특허출원인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출원 당시에 제2항제4호의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를 특허출원서에 첨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도록 명세서를 보정하여야 한다.

1.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
2. 제1호의 기한 이내에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(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3개월이 되는 날 후에 통지받은 경우에는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)

⑥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할 때에는 보호받 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데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구조·방법·기능·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.

⑦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 후에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한까 지 명세서를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.

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특허출원인”을 “특허출원인 은 제42조제5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한까지 또는”으로 하고,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, “각 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55조제3항 중 “제133조의2제3항”을 “제133조의2제4항”으로 한다.

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8조의2(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) ①특허청장은 제58조제1항의 규정 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,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

1.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
2.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고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.

제5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특허출원인의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 된 때에 한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.

제62조제4호 중 “第42條第3項 내지 第5項”을 “제42조제3항·제4항·제 8항”으로 한다.

제6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심사관은 특허청구범위에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 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그 통지 서에 거절되는 청구항을 명시하고 그 청구항별로 거절이유를 구체 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.

제63조의2 단서 중 “제42조제5항”을 “제42조제8항”으로 한다.

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제4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규정에 따라 특허청구범 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를 첨부한 특허출원 및 제87조제3항의

규정에 따라 등록공고를 한 특허의 경우에는 출원공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.

제8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특허출원(분할출원, 변경출원 및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특허출원을 제외한다)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이미 납부된 수수료 중 특허출원료 및 심사청구료

제118조제2항 중 “제39조제1항·제81조의3제5항·제103조 내지 제105조·제122조·第182條 및 第183條”를 “제81조의3제5항·제103조 내지 제105조·제122조·제182조·제183조 및 「발명진흥법」 제8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19조제1항 중 “第39條第1項·第100條第4項 또는 第102條第1項”을 “제100조제4항·제102조제1항 및 「발명진흥법」 제8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33조의2제1항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심판장이 제1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간 후에도 청구인의 증거서류의 제출로 인하여 정정의 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정정청구를 하게 할 수 있다.

제133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,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동조제5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제3

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정청구를 하는 때에는 해당 무효심판절차에서 그 정정청구 전에 수행한 정정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.

제136조제7항 중 “제39조제1항·제100조제4항 및 제102조제1항”을 “제100조제4항·제102조제1항 및 「발명진흥법」 제8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37조제1항제2호 중 “제133조의2제3항”을 “제133조의2제4항”으로 하고, 동조제4항 전단 중 “제133조의2제2항 및 제3항”을 “제133조의2제3항 및 제4항”으로 하며, 동항 후단 중 “제133조의2제2항”을 “제133조의2제3항”으로 한다.

제1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
2.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청구인으로서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발명(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발명을 말한다)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 발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

구서의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제170조제1항 후단 중 “제63조”를 “제63조제1항”으로 한다.
제174조제2항 후단 중 “제63조”를 “제63조제1항”으로 한다.
제200조의 제목 “(新規性이 있는 發明으로 보는 경우의 特例)”를 “(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)”로 한다.
제214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,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특허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당성 여부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국제출원의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제218조 중 “規定된 것외에 書類의 송달을 요하는 대상 및 送達節次 등”을 “규정된 서류의 송달절차 등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특허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) 제42조, 제47조제1항, 제55조제3항, 제59조제2항 단서, 제62조제4호, 제63조의2, 제64조제1항 단서, 제170조제1항 후단 및 제174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.
제3조(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) 제58조의2의 개정규정

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특허출원 등에 대한 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) 제8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.

제5조(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에 관한 적용례) 제133조의2 및 제1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.

제6조(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설명서 및 도면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) 제14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.

제7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특허출원 및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·심판·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◇특허법 개정이유

특허출원인의 특허출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허출원 명세서의 작성시 발명의 설명에 관한 기재요건을 완화하고, 특허출원인이 보호받고자 하는 특허출원서의 특허청구범위에 대하여 종전에 특허출원시에 기재하도록 하던 것을 특허출원 후

출원공개 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재할 수 있도록 하며, 특허심사관이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결정 전에 거절이유를 미리 통지할 때에는 거절이유가 있는 사항을 모두 명시하고 그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,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◇주요내용

가. 특허출원 명세서에 기재하는 ‘발명의 상세한 설명’ 사항의 기재요건 완화(법 제42조제3항)

- (1) 명세서에 기재하는 ‘발명의 상세한 설명’ 사항에는 그 발명의 목적·구성 및 효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나, 발명 기술의 다양화·복잡화 추세에 따라 특허출원인이 현재의 기재요건에 따라서는 충분하게 그 사항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.
- (2) ‘발명의 상세한 설명’ 사항의 기재요건에서 발명의 목적·구성 및 효과로 구분하는 것을 삭제하고, 특허출원인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편리하고 다양하게

그 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함.

- (3) 특허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에 대하여 다양한 표현방법을 통하여 그 사항을 설명할 수 있게 됨으로써 특허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나. 특허출원 명세서에 특허청구범위 기재의 유예(법 제42조제5항 신설)

- (1) 특허출원시에 반드시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한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, 발명자가 그 발명에 대하여 보호받고자 하는 특허청구범위의 세부항목 및 설명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는데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음.
- (2) 특허청구범위를 특허출원서 제출 후 출원공개(1년 6개월) 전까지 명세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함.
- (3) 특허출원인이 특허청구범위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그 발명에 대한 특허청구범위를 효과적으로 기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다. 특허출원의 거절이유에 대한 사전통지 내용의 명확한 기재(법 제63조제2항 신설)

(1) 특허심사관이 특허출원서의 특허청구범위에 2 이상의 청구항(請求項)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 거절이유가 있는 청구항 모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밝히지 아니함에 따라 특허출원인으로서의 거절이유가 통지되지 아니한 일부 청구항의 거절이유를 알지 못하는 불편이 있음.

(2) 특허심사관은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거절이유가 있는 청구항 모두에 대하여 청구항별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함.

(3) 특허출원인이 거절이유가 있는 모든 청구항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어 일부 청구항에 대한 권리 포기나 보완 조치 등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노무현 인

2007년 1월 3일

국무총리 한명숙

국무위원
정보통신부장관 노준형

◎법률 제8198호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1.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(讓受)하고자 하는 자
2.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자
3. 허가받은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고자 하는 기간통신사업자
4.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